

제92회 정기이사회 회의내용

1. 회의개요

회 의 명: 제92회 정기이사회

기 관 명: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

일시 및 장소: 2019. 12. 26(목) 10:00, 재단 10층 회의실

출석현황

- 재적이사: 10명(김중해, 홍영준, 배형우, 백일현, 김혜란, 이미성, 장지현, 박은숙, 윤홍식, 신용규)

- 출석이사: 8명(김중해, 홍영준, 김혜란, 이미성, 장지현, 박은숙, 윤홍식, 신용규)

- 재적감사: 2명(이해선, 장윤미)

- 출석감사: 2명(이해선, 장윤미)

- 배 석 자 : 7명(재단-지일철, 김현대, 최우영, 정은정, 나도철, 서울시-권자은, 정선아)

안건목록

의안번호	건 명	의결내용
350	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	원안의결
351	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	원안의결
352	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	원안의결

기록부서 : 경영기획실

2. 논의결과

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
- 이사장이 성원(재적이사 10명 중 8명 참석)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.

2020년 중점추진과제 및 업무조정 등 실행방안 보고

-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2020년 중점추진과제 및 실행방안을 보고함.

□ 의결안건

① 의안번호 제350호 <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>

○ 안건 주요내용

-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(예산액 : 27,130,540천원, 총 82개 세부사업 / 전년대비 1,867,774천원 증, 7.4% 증)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.

○ 참석자 발언요지

- (***) 조직개편 및 중점추진과제 등에 대해 시의회 사전보고가 필요함.
- (***) 재단은 좋은 연구를 위해 노력해야 함. 특히 재단은 다른 기관에 비해 연구 인력이 많으므로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연구 외 자체 연구를 팀별 배분하여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함.
연구성격을 기본연구와 현장요구 연구 등으로 분리 후 예산에 반영되기를 기대함.
- (***) 팀별 고유 연구 추진에 동의하며, '서울시 비수급 빈곤 실태조사' 등 인구·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.
- (***) 재단은 중장기 서울시 복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함. 뒤따라 가는 연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함. 전체 예산대비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예산의 비중은 4.37%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.
- (***) 재단이 수행해야 할 과제의 비중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음. 재단 연구 예산은 타 기관과 비교시 연구직 인건비를 별도 편성하기 때문에 비중이 낮아보일 수 있음. 즉, 연구비용과 인건비, 기타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면 연구예산의 비중은 높아짐.
- (***) 타 연구기관의 경우도 즉각 연구는 대응이 가능하나, 중장기적 연구는 한계가 나타남.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음. 서울복지교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.
- (***) 서울복지교육센터는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임.
현 청사 내에서 수용이 불가하여 외부 교육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 50플러스재단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입주한 포스트타워

(마포우체국) 4층을 공동사용할 예정임.

○ **논의결론**

- 재단 정관 제22조(의결사항) 제2호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(이사회 의결사항) 제2호에 의거 출석이사 8명 중 8명이 찬성하여 원안 의결함.

② **의안번호 제351호 <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>**

○ **안건 주요내용**

-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(예산액 : 18,024,093천원, 총 5개 세부사업 / 전년대비 4,565,013천원 증, 33.9% 증)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.

○ **참석자 발언요지**

- (***)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은 민감한 사항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.
- (***) 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기관임. 재단은 서울시를 통해 지정기탁되는 기부금품만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함. 연도별 기부금을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님.
- (***) 통장사업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매칭지원금이 정액제(연간 10억원)로 전환되면 부족분을 기금적립금에서 활용해야 함. 이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.
- (***) 축소된 예산은 기간 등을 조정하여 운용할 예정이며, 서울시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나가겠음.
- (***) 통장사업 초기설계시 민간재원은 50% 투입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모금에 한계가 있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매칭지원금 비율이 20%선에서 지원되어 왔음.
- (***) 시민 지원 프로그램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함.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.

○ **논의결론**

- 재단 정관 제22조(의결사항) 제2호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(이사회 의결사항) 제2호에 의거 출석이사 8명 중 8명이 찬성하여 원안 의결함.

③ 의안번호 제352호 <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>

○ 안건 주요내용

-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(일반직 정원 6명 증원 및 별표 2 정원 171명→177명 확대)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.

○ 참석자 발언요지

- (***) 매년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인력도 증원되고 있는데 기존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직원을 재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.
- (***) 재단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. 인력증가는 서울시 예산과 사업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종료사업 인력을 신규사업으로 전환배치하고 있으며,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.
- (***)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임.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요구받는 사업은 많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.
- (***) 민간의 경우 한시직이나 계약직으로 대응하고 있음. 추진사업 대비 적정 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됨.

○ 논의결론

- 재단 정관 제22조(의결사항) 제5호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(이사회 의결사항) 제6호에 의거 출석이사 8명 중 8명이 찬성하여 원안 의결함.

3. 보고사항

- 보고 1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‘단체협약 해석 등 견해 결정’ 이행보고
- 보고 2. 2019년 단체협약 체결 결과보고. 끝.